

여시재 미래디자인 시리즈

디지털 무역 규범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

여시재
Future Consensus Institute

| 저자 |

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박설의 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 기획·편집 |

황세희 여시재 글로벌전략실장

여시재 미래디자인 시리즈

디지털 무역 규범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

발행일자 : 2021.2.17.

출판사신고번호 : 제2020-000080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백석동길 224

사업자등록번호: 769-82-00065

대표전화: 070-4280-1298 /media@fcinst.org

ISBN : 979-11-971121-2-6

여시재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2016 FUTURE CONSENSUS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인사말

재단법인 여시재는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2016년 설립된 싱크탱크입니다.

미중경쟁과 디지털 전환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환경이 되었습니다.

여시재는 미래디자인시리즈를 통해

미중경쟁 속의 한반도의 전략을 고민하고

갈등과 대립보다는 협력과 공존을 유도할 동북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전환 속에 국제무역질서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에 걸맞는 무역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디지털 무역은 무엇이고 디지털무역을 둘러싼 국제질서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한국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여시재의 미래디자인 시리즈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재단법인 여시재 대표연구위원

전병조

목차

1. 디지털 무역이란 무엇인가 :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 경제까지
2. 디지털 무역 국제규범의 필요성
3. 디지털 무역 국제규범 수립 동향
 - 디지털 무역을 다룬 최초의 FTA, 한미 FTA
 - 주요 디지털 무역 쟁점을 의무화 한, CPTPP
 -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전략이 반영된 USMCA
 - 디지털 무역을 독립적으로 다룬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
 - 미·중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중견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자 한 DEPA
 - 최대 규모의 메가FTA, RCEP
4. 디지털 무역의 주요 쟁점
 -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 및 데이터 현지화
 -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과세
5. 한국의 디지털 무역 대응 과제

1. 디지털 무역은 무엇인가: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 경제까지

디지탈 전환이 가속화되며 ‘디지털 무역 (Digital Trade)’이 전세계 무역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등장과 급속한 발전은 무역 환경의 디지털화를 야기했고, 이는 새로운 교역재와 거래 수단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전통적인 무역보다 더욱더 다양한 주체가 국가 간 무역에 참여하게 되는 새로운 길도 열렸다. 이른바 ‘디지털 무역’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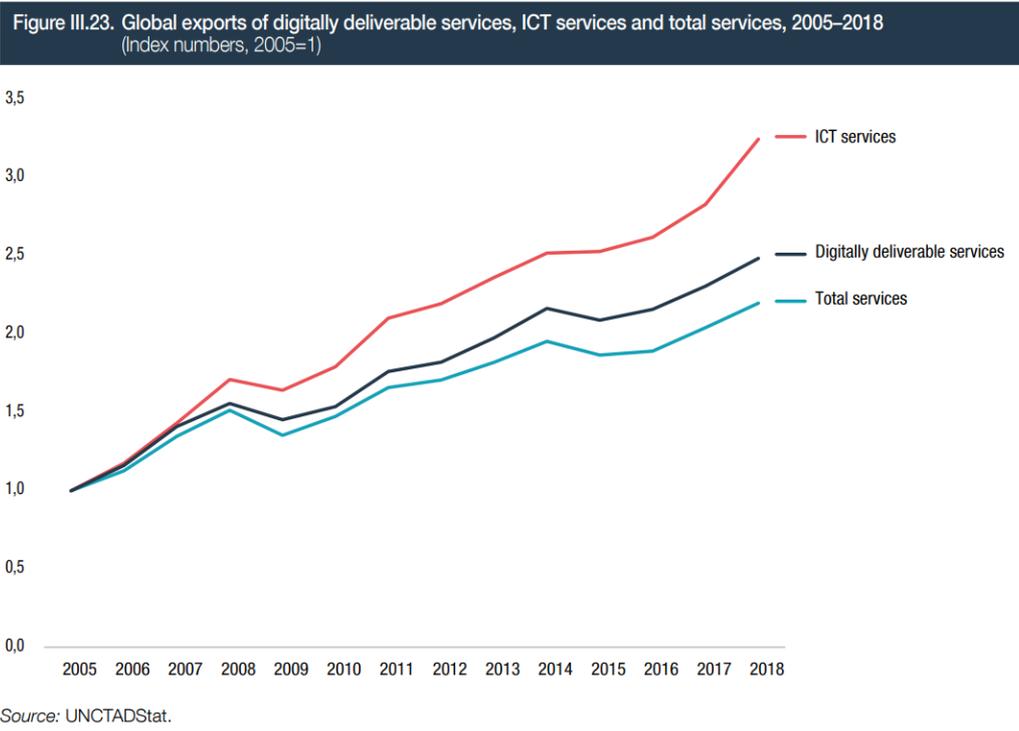
2019년 전세계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은 8000억~1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전세계 무역량의 약 3.5%~ 6%이다.¹ 전세계 총 무역량과 비교했을 때 아직 그 비중은 크지 않으나, 주목해야 할 것은 가파른 성장세이다. UNCTAD의 ‘디지털 경제 리포트’에 따르면, ‘디지털 서비스 (digitally delivered services)’ 무역 규모가 2005년에서 2018년 사이에 연평균 7%씩 성장했다. 전체 서비스 무역이 연평균 6%씩 증가한 것보다 빨랐다.²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규모는 2005년에서 2018년 사이 연평균 8.8%씩 급증하여, 디지털 서비스가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22.1%에서 2019년 40.4%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도 한국에서 2016년 이후 연평균 31.8%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증가했다.³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강타하며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가 한층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무역’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가 앞으로 더욱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무역 트렌드를 반영하듯, 한국무역협회는 2020-2021 통상 이슈 TOP7으로 ‘디지털 무역’을 꼽았다.⁴

1 Christian Ketels and Arindam Bhattacharya (2019), “Global Trade Goes Digital” <https://www.bcg.com/publications/2019/global-trade-goes-digital> (검색일: 2020. 12. 21).

2 UNCTAD (2019), “Digital Economy Report” https://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der2019_en.pdf (검색일: 2020. 11. 25).

3 손창우·박소영 (2020), 「디지털 무역의 한·중 비교와 무역 규범의 글로벌 쟁점」,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41호.

4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2020), 「코로나19 이후 통상 축의 이동 - 무역협회가 뽑은 2020-2021 통상 이슈 TOP7」, 『KITA 통상 리포트』, 16호.



〈UNCTAD(2019)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모 성장세 비교 그래프〉

그렇다면 디지털 무역은 대체 무엇일까? 디지털 무역은 아직 국제적으로 정립된 하나의 정의가 없다. 다만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모든 국가 간의 교역 활동’을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로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

디지털 무역은 전자상거래에서 출발했다. WTO가 1998년 전자상거래 (e-commerce)를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유통, 판매 또는 전달”⁵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상거래 방식의 전자화에 초점을 둔 협의의 개념이었다. 협의의 전자상거래에서 주체는 기업들이었다. 기업이 주축으로 소비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B2C거래와, 기업이 기업에 판매하는 B2B 거래가 전자상거래의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⁵ World Trade Organization, “Electronic commerce”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ecom_e/ecom_e.htm(검색일: 2020.12.21)

1 → 2	정부(G)	업계(B)	소비자(C)
정부(G)	G2G 부처 간 협조	G2B 공공정보 제공	G2C 공공정보 제공
업계(B)	B2G 정부조달	B2B 전자상거래 <i>(Industrial Platform)</i>	B2C 전자상거래 <i>(Platform Business)</i>
소비자(C)	C2G 세금 납부	C2B 개인정보 제공	C2C 온라인 장터

* 디지털무역의 범주  + 

〈이한영(2020) 디지털무역과 전자상거래 범주 비교〉

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 간 교역을 이루는 주체와 그 거래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전자상거래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인 ‘디지털 무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국가 간 교역의 주체는 기업을 넘어 정부와 소비자로 확장되며 새로운 무역 시장을 열며 C2B, C2C, G2C, G2B 거래가 국가 간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교역제도 등장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나 정부가 취합한 공공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비롯해 원격 의료 서비스나 교육 콘텐츠와 같이, 전통적인 무역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서비스 상품들이 교역의 대상이 되었다.⁶

2017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디지털 무역을 “인터넷 상 소비재의 판매와 온라인 서비스의 공급뿐만 아니라, GVC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이동, 스마트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

⁶ 이한영(2020), 「디지털경제·통상과 국제규범 동향」, 『글로벌리더십 과정』, 국립외교원

스, 무수한 여타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했다.⁷ 2020년 OECD가 IMF, WTO와 함께 발표한 ‘디지털 무역 측정 핸드북’에서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로 주문되거나 디지털로 배달되는 모든 무역”으로 정의되었다.⁸ 이처럼 디지털 무역은 기존의 전자상거래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디지털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이러한 거래에서 따라오는 데이터와 지적재산권의 이동까지 디지털 기술로 가능해진 다양한 무역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확장은 무역 협정에서 쓰이는 용어의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6년 한미 FTA와 2015년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챕터 명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2018년 USMCA에서 ‘디지털 무역’이 챕터명으로 쓰이면서 ‘디지털 무역’이 무역 협정에서 빈번히 사용되기 시작했다. 2019년 미국과 일본의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도 ‘전자상거래’가 아닌 광의의 ‘디지털 무역’이 쓰였다. 2020년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 사이에서 체결된 DEPA는 디지털 무역을 넘어 ‘디지털 경제 협력협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그 범위를 한층 더 확장하였다.

⁷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17), “Key Barriers to Digital Trade”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fact-sheets/2017/march/key-barriers-digital-trade>(검색일: 2020.11.26)

⁸ OECD,WTO and IMF(2020), “Handbook on Measuring Digital Trade (Version 1)” .
<https://www.oecd.org/sdd/its/Handbook-on-Measuring-Digital-Trade-Version-1.pdf>(검색일: 2020.11.17)

2. 디지털 무역 국제규범의 필요성

디지탈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무역의 개념이 확장되며 새로운 국제 무역 규범의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무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통상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규제할 국가 간 협력과 합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단적인 예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해외 고정사업장이 필요하지 않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들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며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을 기반으로 디지털 서비스의 국제적인 공급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해외에 법인이나 서버를 두지 않고도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 국가의 법으로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정사업장 과세 원칙에 따라 소비 국가에서는 자국에 법인도 서버도 두지 않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거래 시 필요한 개인의 신상정보나 금융정보 등의 데이터가 해외로 이전되고 공유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국가 안보 침해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이처럼 디지털 무역의 확장으로 기존의 무역 규범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자 합의에 의한 디지털 무역 국제 규범은 부재한 상황이다. WTO가 지난 20년 간 디지털 무역에 관한 다자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유일한 성과는 1998년 처음 채택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화 조치(moratorium)’이다.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상품(digitally transferred goods)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무역을 자유화하자는 조치이나 영구적인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매 각료회의에서 2년씩 연장하는 형태로 합의를 이루고 있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연장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전자적 전송물을 전혀 수출하지 않고 오직 수입만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이 조치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무효화 논의가 재점화 되며 한시적 모라토리엄으로써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1998년 WTO가 제2차 각료회의를 통해 처음 전자상거래 규범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을 당시부터 국제 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의 이해는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은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등 미국을 중심으로 컴퓨터 산업이 발전하고 있던 시기였으나 디지털 경제는 물론이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했다. 각 국가별 경제 규모와 무역 환경, 디지털 산업 발전 정도 등에 따라 논의해야 할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국가마다 상이 했고 결국 포괄적인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디지털 무역이 본격화 되어 가파른 성장을 이루던 2010년대에도 WTO 차원에서 서비스 무역만이라도 국제 규범을 협상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기도 했다. 2013년 복수국간 서비스 무역협정 (TISA) 협상 개시가 그것인데, 이 협상에서 통신 서비스,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거래 시 금융 데이터 이전에 대한 자유화 문제까지 논의 되었다. 하지만 2016년까지 총 21차례의 공식협상이 개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017년 이후 협상이 정체되며 성공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디지털 무역 국제 규범 형성의 필요성이 전자상거래 발전 초기부터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다자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디지털 무역 쟁점 별로 각 국가마다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대까지는 무역 관련 공식 문서와 인증서의 전자화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등이 쟁점이었다. 반면, 글로벌 플랫폼기업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한 최근에는 이하 4장에서 상술할,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 데이터 서버 현지화,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의 문제 등이 디지털 무역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이 쟁점들에 대해 각 국가들의 입장이 대립하게 되면서 다자 합의가 정체되자, 2000년대 이후에는 양자간 FTA 또는 메가 FTA 체결을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3. 디지털 무역 국제규범 수립 동향

디지털 무역을 다룬 최초의 FTA, 한·미 FTA⁹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규범을 다룬 FTA가 바로 한·미 FTA이다. 미국의 요구로 ‘전자상거래(Chapter 15 - Electronic Commerce) 챕터’가 별도로 포함되었다. 이 협정에서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디지털 재화 비차별대우(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그리고 전자서명 및 전자 인증의 선택을 자유화하는 의무조항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세개의 의무 조항 외에 국경간 데이터 이전 보장이나 인터넷 접속 및 이용 자유화 등의 내용들은 전부 노력(end endeavor) 조항으로 포함되었다.

주요 디지털 무역 규정을 의무화 한 CPTPP¹⁰

한·미 FTA 체결 이후 한동안 디지털 무역 규범은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을 통해 한·미 FTA보다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Chapter 14 - Electronic Commerce) 챕터’를 채택한 CPTPP는 한·미 FTA보다 더 다양한 디지털 무역 관련 이슈들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의무 조항을 늘려 디지털 무역의 자유화를 한층 더 꾀했다.

특히 현재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위한 핵심 쟁점 3가지(국경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데이터 서버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CPTPP에서 모두 다루어졌다. CPTPP는 최초로 국경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까지 모두 의무조항으로 도입되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디지털 무역의 자유화를 안전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 규정도 의무조항으로 포함되었다.

한·미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이루었으나 CPTPP는 국경간 데이터 이전, 데이터 설비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당사국의 국내 규제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한 공공정책상 목표 달성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이하 LPPO)” 규정

⁹ 한국과 미국이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관세 철폐 등에 관해 맺은 협정으로 2007년 협상 타결, 2012년 발효 되었다. 2019년에는 개정안이 새롭게 발효되었다.

¹⁰ 아시아·태평양 11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이 참여한 자유무역 협정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며 맺어졌다. 2018년 12월 발효 되었다.

이 포함되어 공공질서 유지 및 국가 안보 등의 예외 상황에서는 국경간 데이터 이전 금지가 허용되는 등 유연성을 두어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전략이 반영된 USMCA¹¹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새로운 협정인 USMCA는 현존하는 디지털 무역 협정 중 가장 자유화 수준이 높은 협정이다. 한·미 FTA나 CPTPP와 달리 ‘디지털 무역(Chapter 19 - Digital Trade)’이 챕터명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USMCA 역시 CPTPP와 같이 국경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데이터 서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 코드 공개 요구 금지와 같은 디지털 무역 핵심 규정들을 의무 조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 CPTPP와 달리 USMCA에서는 일부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디지털 무역 자유화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USMCA에서는 지나친 개인정보 보호가 자유로운 디지털 무역 활동을 제한할 것을 우려, 규제가 도입될 때에는 규제 목적과 위협의 정도에 비례하는 정도의 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경간 정보 이전 금지 조항에는 CPTPP처럼 LPPO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서버 현지화 요구 금지 조항에서는 LPPO규정이 삭제되어 있어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을 독립적으로 다룬 첫번째 협정,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¹²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은 그동안 디지털 무역 관련 내용은 FTA의 한 챕터 내에서 다루어졌던 것과 달리, 독립적인 협정으로 최초 도입된 사례이다. 기본적으로 USMCA나 CPTPP와 같이 국경 간 정보 이전 자유화, 데이터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의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에서는 USMCA와 마찬가지로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소스코드에 포함된 알고리즘의 공개도 금지하고, 이 외에 디지털 서비스에 특정 암호화

¹¹ 북미 3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이 참여한 자유무역 협정이다. 1994년 발효 되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2017년 재협상한 결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USMCA)’으로 새롭게 명명되었으며 2018년 9월 타결, 2020년 7월 발효되었다.

¹²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Digital Trade Agreement)는 2019년 1월 서명, 2020년 1월 발효되었다.

기술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금지¹³하는 등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슈들까지 포괄하여 그 규제 범위를 확대하였다.

미·중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중견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자 한 DEPA¹⁴

최초로 전자상거래 챕터가 도입된 한미 FTA부터 디지털 무역 협정의 기반을 형성해온 협정들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과 같은 디지털 산업을 선도하는 무역 강국들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중견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중견국끼리의 협력을 도모하는 목적의 디지털 무역 협정들이 맺어지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가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는데 그 예가 바로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가 체결한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이다. 협정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이 협정은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 무역으로 확장된 것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 경제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협정문은 디지털 경제의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으나 디지털 무역 규범 외에도 AI와 핀테크 등 새롭게 떠오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디지털 무역 규범 측면에서는 CPTPP와 비슷한 수준이라 평가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호주와도 디지털 경제 협정 (Digital Economy Agreement, 이하 DEA)를 맺고 7개의 MOU를 체결하며 두 중견국 간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은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싱가포르와 2020년 디지털 무역 협상을 개시하며 디지털 경제 협력 기반을 다지고 있다.

최대 규모의 메가 FTA, RCEP¹⁵

¹³ 김정균·곽동철(2019), 「미일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TA 통상 리포트』, 3호.

¹⁴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DEPA는 2020년 6월 타결되어 현재 회원국의 협정 비준 추진중이다.

¹⁵ ASEAN 10개국(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아시아·태평양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맺은 자유무역협정이다. 2020년 12월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루어졌다.

지난 2013년 협상이 개시된 이후로 8년만에 타결된 최대 규모의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에도 전자상거래 챕터가 포함되었다. 대부분 개도국인 아세안(ASEAN)국가들이 참여한 협정인 만큼 디지털 무역 규정의 자유화 수준은 낮은 편이다. 다만 RCEP이 전통적인 무역 분야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협상이었던 만큼, RCEP 협정에 포함된 전자상거래 챕터(Chapter 12, Electronic Commerce)는 CPTPP보다 자유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요 규정인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현지화 금지 관련하여 LPPO 예외 규정 외에도 안보 예외 규정을 포괄적으로 도입하고 있어¹⁶ 당사국의 규제 자율권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RCEP 전자상거래 챕터는 아세안 국가들 역내의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디지털 무역의 주요 쟁점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 자유화 및 데이터 현지화

현재 디지털 무역 규범과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 자유화와 데이터 설비의 현지화 문제이다. 디지털 자유 무역을 위해 국경간 데이터의 원활한 이전을 보장하고 데이터를 다루는 컴퓨팅 시설의 현지화 요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들과, 자국 소비자나 기업을 보호하고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국가들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 두 문제는 현재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 수립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디지털 무역에서는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이 불가피하다. 기본적으로 국가 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결제 정보를 포함한 금융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디지털 무역의 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원격 의료 서비스에서는 개인의 의료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 간에 발생한 일인만큼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어 개인정보 침해 시 처벌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합의가 필수적이다.

¹⁶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LPPO) 예외와 안보 예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조치(any measure that it considers necessary)’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 설비 현지화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들의 경영 효율성과 연결된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서비스 운용을 위해 데이터 서버 등 컴퓨팅 시설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마다 두지 않고 본사나 제 3지역에 두고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공급받는 소비자 국가의 입장에서 데이터가 저장되고 처리되는 서버가 국외에 있을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침해 시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쟁점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외에, 후술할 과세 문제 또한 소비자 국가가 데이터 설비 현지화를 요구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 자유화와 데이터 및 서버 현지화 요구 금지가 필요하나, 이 문제에 대해 주요 국가들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존하는 가장 높은 자유화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USMCA에서도 나타듯, 미국은 기본적으로 상업적 활동을 위한 경우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전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데이터 현지화도 마찬가지로, 상업적 활동의 조건으로 컴퓨팅 시설의 현지화 요구 역시 금지하고 있다.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과 같이 세계 디지털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플랫폼 및 IT 기업들을 대다수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 디지털 기술 기업들이 전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무역 장벽을 낮추는 글로벌 디지털 무역 기반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에게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 제한과 현지화 요구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가장 큰 무역장벽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EU는 개인정보를 인권으로 인식하고,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같이 디지털 무역의 자유화를 위해서 데이터 이전 자유화 및 현지화 금지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으나 의무 규정이 아닌 노력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EU는 EU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인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역외적용하여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받는 국가가 “적정한 보호 수준”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그동안 EU와 미국은 2016년에 합의한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협정을 통해 EU와 미국간 개인정보 이전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가 이 협정을 무효화 하여 미국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중국은 ‘인터넷 주권(Internet sovereignty)’과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지난 2017년 네트워크 안전법¹⁷을 제정하며, 데이터 현지화 의무를 명문화 하고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수집되고 생성된 데이터의 경우 반드시 중국 내에 저장해야 하며, 해외로 이전해야 할 경우에는 관련 부처의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⁸

¹⁷ 정식명칭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¹⁸ 정연수(2020), 「중국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한 제도의 현황과 전망」, 『KISA REPORT』, 6호.

인도에서도 ‘데이터 주권(data ownership)’을 강조하며, 데이터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2017년 인도 대법원이 프라이버시를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면서 인도인의 데이터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인도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EU의 GDPR과 같은 통합적인 개인정보 보호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8년 수립된 개인정보 보호 법안(Privacy Data Protection Bill)을 통해 전자상거래 업체 등에 대해 데이터 현지화 의무를 규정하였다.¹⁹ 또한 법안과 별도로 인도준비은행이 인도에서 발생한 결제 정보를 인도 내에 저장할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정부 기관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계약을 맺을 때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적용 하는 등 데이터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²⁰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과세

그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조세 기준 마련도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현행 국제조세기준에 따르면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에서만 기업에 과세가 가능하다. IT 기업의 경우에는 서버 소재지를 고정사업장으로 분류한다.²¹ 따라서 모든 시장소재지국에 서버를 두지 않고도 국경을 초월하여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글로벌 IT 기업의 경우, 창출되는 가치 규모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과세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무역 협정에서 IT 기업의 데이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조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조세 기준은 새로운 디지털 경제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기반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승자독식의 형태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독점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수익을 창출

¹⁹ 다만 2019년 개정안에서는 인도에서 수집되고 생성된 데이터의 최소 복사본 1개를 인도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해야 한다는 ‘정보의 현지화’ 의무 사항은 없어지고, ‘핵심 개인정보’로 분류된 개인정보만 인도에서 저장되고 처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2019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자세한 사항은 Apurv Saradeshmukh(2020), 「인도의 개인 정보 보호법」, 『Asia Business Law Journal Korean Edition』 <https://law.asia/ko/india-data-privacy-law/> 참조.

²⁰ 이승주(2020) 「디지털 무역 질서의 국제정치경제: 디지털 무역 전략의 차별화와 갈등 구도의 복잡성」, 『한국동북아논총』, 25(2), 53-80

²¹ 노현정(2020), 「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71호.

해도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재하다는 점과, 이러한 상황을 이용한 IT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간 과세권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국제조세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G20과 함께 2013년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발족했다. 디지털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과세 문제에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137개국이 참여한 포괄적 이행체계를 통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²² 물리적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글로벌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과세 원칙 마련이 논의의 중심이다. 다만 다년간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각 국가들 간의 의견차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당초 2020년 내 합의를 목표로 했던 논의가 지연되며 최종 합의가 2021년 중순으로 미루어진 상황이다.²³

결 국 OECD 주도의 ‘디지털세’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자 프랑스를 시작으로 여러 국가들이 독자적인 ‘디지털세’ 마련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2019년 7월 자국 내에서 창출한 디지털 서비스 수익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EU 국가 중 가장 먼저 제도화했다. 뒤이어 다른 서유럽 국가들은 2-3% 수준, 동유럽 국가들은 5-7% 수준의 ‘디지털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주권을 강조하는 인도를 비롯한 태국, 베트남 등의 국가들도 글로벌 IT 기업에 과세할 수 있는 조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²⁴

하지만 글로벌 IT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미국측의 반발이 거세다. 미국은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에서도 국제조세기준과 합치하지 않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국내조세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 디지털세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을 미국 IT 기업을 겨냥한 불공정 무역으로 보고,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프랑스 제품을 대상으로 24억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

²² Amie Ahanchian, Donald Hok, Phillippe Stephanny, and Elizabeth Shingler (2021), “Digital Services Tax: Why the World is Watching”, Bloomberg Tax,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digital-services-tax-why-the-world-is-watching>)

²³ OECD (2015), “BEPS Action 1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http://www.oecd.org/tax/beps/beps-actions/action1/> (검색일: 2020.12.26)

²⁴ 김영채 (2020.07.16), 「디지털세 논쟁 2.0 ... 코로나가 촉발」, 『한국무역신문』.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6&no=66376> (검색일: 2020.12.08)

쟁이 심화되자 양측은 2020년 1월 OECD 주도의 ‘디지털세’ 논의를 통해 협상을 이어 가자며 약 1년간 과세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으나, OECD의 합의가 2021년 중순으로 연기됨에 따라 프랑스는 2020년 12월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디지털세’ 부과를 재개하였다.²⁵ 이에 미국이 반발하여 프랑스산 제품에 세율 25%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물릴 것으로 관측되었다.. 하지만 프랑스 외에도 인도, 이탈리아, 영국 등 10개국도 자체적인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미국은 이 국가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일괄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잠정적으로 보복관세 조치를 유예하였다.²⁶ 이처럼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관세를 두고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입장차에 따른 논쟁이 심화되며, ‘무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²⁵ 이윤정 (2020.12.31) 「‘디지털세’가 쏟아올린 무역전쟁의 서막」,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2312116015(검색일:2021.01.12)

²⁶ Andrea Shalal (2021.01.08), “U.S. suspends French tariffs over digital services tax”,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trade-france/us-suspends-french-tariffs-over-digital-services-tax-idUSKBN29C2KQ>(검색일:2021.01.12)

5. 한국의 디지털 무역 대응 과제

분야	주요 요소	한·싱가포르	한·EU	한·패루	한·미국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국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한·중미	CPTPP	USMCA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적 전송 무관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한시적)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디지털 재화 비차별대우	의무	-	-	의무	-	-	-	-	-	-	의무	의무	의무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	-	협력	협력	의무	의무	협력	-	의무	협력	-	-	의무	의무
	종이없는 무역	-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온라인 소비자 보호	온라인 소비자 보호	-	협력	협력	협력	협력	의무	협력	-	협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개인정보 보호	-	협력	의무	-	협력	의무	의무	의무	협력	의무	노력	의무	의무
	스팸메세지 규제	-	협력	-	-	협력	협력	-	-	-	협력	협력	의무	의무
국경간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	정보의 국경간 이전 원활화	-	-	-	협력	-	-	협력	-	-	-	-	의무	의무
	컴퓨팅 설비 현지화 금지	-	-	-	-	-	-	-	-	-	-	-	의무	의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	-	-	-	-	-	-	-	-	-	-	-	의무	의무
	인터넷 접근 및 이용 자유화	-	-	-	협력	-	-	-	-	-	-	-	협력	협력
	인터넷 접속료 부담	-	-	-	-	-	-	-	-	-	-	-	협력	-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용자의 책임 범위	-	-	-	-	-	-	-	-	-	-	-	-	의무

<이경수(2020) 한국의 기체결 FTA 및 주요 메가 FTA에서의 디지털무역 규범화 현황 비교>

한 국은 양자 FTA를 통해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화, 디지털 재화 비차별대우와 같이 전자상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기본적인 무역 규범을 정립하고 있다. 그러나,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국경간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를 위한 규정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²⁷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 자유화 및 현지화 금지 요구,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은 현재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내용들이다. 따라서 한국도 기체결 FTA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를 전부 포괄하는 메가 FTA를 체결하여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로써 국내 디지털 기업들의 원활한 국내외 비즈니스 활동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TPP에서 탈퇴했던 미국이 CPTPP에 가입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은 기체결 FTA를 통해서 다루고 있지 않던 다양한 디지털 무역 관련 주요 규정에 대한 입장을 한번에 정리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아시아와 태평양 주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CPTPP는, USMCA와 달리 디지털 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면서도 예외 조항을 인정하고 있어

²⁷ 이경수(2020), 「디지털 통상의 이해」, 『2020년 디지털통상 아카데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 부담이 덜하고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GVC)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었던 통상 환경이 지역 공급망(RVC)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CPTPP 가입은 역내 무역·투자 활동에 한국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국내 디지털 무역 관련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현재 디지털 무역 관련 법들은 역외 규정, OTT 사업자 규제, 개인정보 보호 등 법들이 파편화 되어 있으며 각각의 법률이 서로 그 수준이 맞지 않아 일관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우리의 중소기업 육성 전략과 연계하여 규제 설정의 방향부터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국내 대형 디지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규제 수준을 높이다 보니 오히려 국내 디지털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지 않았다. 반면에 국내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멀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다. 디지털 무역이 전세계적으로 큰 화두가 되면서 각 국가들이 새롭게 통상 및 산업 전략을 짜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원점으로 돌아가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면서도 우리의 디지털 산업 환경에 맞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에 입각하여 통합적인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 재단법인 여시재

여시재는 국가미래전략을 위한 싱크탱크로

통일한국과 동북아의 미래 변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세계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5년 12월,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이 출연해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